지평지성 헌법소송 Newsletter

| 2012년 4월 제1호 |

▌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▐

2011. 10. 25. 선고 2010헌가80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사건 : 위헌결정

김영수 변호사

1.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구 '조세범 처벌법'(2004. 12. 31.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, 2010. 1. 1.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조 본문 중 '법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'는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.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'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'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(재판관 이동흡)이 있었습니다.

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과 2010년 7월 29일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위헌결정들{2008헌가14, 2008헌가16, 2008헌가17, 2008헌가18, 2008헌가24 및 2009헌가18, 33, 34, 2010헌가48, 58(병합)}을 잇달아 하였는데,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입니다.

2. 다운로드 : 2010헌가80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

법무법인 지평지성

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&G 서대문타워 10층 T. 02-6200-1600 F. 02-6200-0800 E. master@jipyong.com

순천 | 상해 | 호치민시티 | 하노이 | 캄보디아 | 라오스 | 태국

Copyright 2008 JIPYONG JISUNG All rights reserved.